

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125
번 호	

제출년월일 : '98. 8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'98. 5. 27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경형승용자동차(배기량이 8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5 · 너비 1.5 · 높이 2.0미터이하)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사항 신설
-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경감하고,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경감 사항 신설
- 조문용어 “지체부자유자”를 “장애인”으로 개정
-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(도로, 공공건물및 공공이용 시설)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 사항 신설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본 최초30분이내는 기본요금(500원)을 적용하고 초과 10분 단위로 요금징수 개정

3. 근거법규

- 주차장법 제14조제2항, 동법시행령제6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
-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, 제17조
- 자동차관리법 제3조,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
- 장애인복지법 제2조,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'98. 7. 28~'98. 8. 16(경상일보, 울산일보, 한울신문, 중구공보)
- 입법예고 결과 : 다른 의견 없음.

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.

1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,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
2.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
3.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
4.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

제20조 제목 · 제1항 · 제2항 · 제2항제1호 · 제2항제2호 · 제2항제3호 · 제3항 및 별표5의 제목중 “지체부자유자”를 각각 “장애인”으로 하고,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·설치하여야 한다.

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 영 주 차 장 요 금 표

(단위 : 1구획당, 원)

구 分	노상 및 노외				노 외		
	기 본 최초30분이내 (1구획당)	기본초과 매30분단위			1 일 주 차	월정기 주차	
		10분이내	20분이내	30분이내		주 간	야 간
1급지	500	200	400	500	10,000	80,000	60,000

비고중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, 초과 10분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주차요금등) ①~③(생략)</p> <p>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내지 6급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 에 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 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 트를 경감한다.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6조(주차요금등) ①~③(현행과같음)</p> <p>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아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 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 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 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 에 의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 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중구 상권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 <p>⑤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<u>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</u>) (신설)</p> <p>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<u>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</u>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1~2(생략)</p> <p>② <u>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</u>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차장 입구에서 <u>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</u> 표지를 식별 가능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. 주차장 입구에서 <u>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</u>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. <u>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</u>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.3미터이상,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<p>③ <u>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</u>소에는 별표5의 장애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0조(<u>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</u>)</p> <p>① <u>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</u>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·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~2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장애인</u> ----- -----.</p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 공영주차장 요금표 (단위 : 1구획당, 원)			[별표 1] 공영주차장 요금표 (단위 : 1구획당,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>노상</th> <th colspan="3">노 외</th> </tr> <tr> <th>30분당</th> <th>30분당</th> <th>1 일 주차</th> <th>월 정 기 주 차 주 간 야 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지</td> <td>500</td> <td>500</td> <td>10,000</td> <td>80,000 6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노상	노 외			30분당	30분당	1 일 주차	월 정 기 주 차 주 간 야 간	1급지	500	500	10,000	80,000 60,00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노상 및 노외</th> <th colspan="2">노 외</th> </tr> <tr> <th>기 본 최초30분이내 (1구획당)</th> <th colspan="2">기본초과 매30분단위</th> <th>1 일 주 차</th> <th>월 정 기 주 차 주간 야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급지</td> <td>500</td> <td>200</td> <td>400</td> <td>500</td> <td>10,000 80,000 6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 분	노상 및 노외			노 외		기 본 최초30분이내 (1구획당)	기본초과 매30분단위		1 일 주 차	월 정 기 주 차 주간 야간	1급지	500	200	400	500	10,000 80,000 60,000
구 분	노상	노 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0분당	30분당	1 일 주차	월 정 기 주 차 주 간 야 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지	500	500	10,000	80,000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노상 및 노외			노 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 본 최초30분이내 (1구획당)	기본초과 매30분단위		1 일 주 차	월 정 기 주 차 주간 야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지	500	200	400	500	10,000 80,000 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비고</p> <p>1~2 (생략)</p> <p>3. 30분 미만의 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.</p> <p>4. (생략)</p>			<p>비고</p> <p>1~2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의 시간은 30분으로 하고, 초과 10분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 단위로 계산한다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5]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(제20조의제3항 관련) 그림 및 비고 (생략)			[별표 5] 장애인 그림 및 비고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의 안 심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125)

1. 의 안 명 :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8. 9. 4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'98. 9. 11
- 라. 위원회 심사 : '98. 9. 16

3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사회산업국장 정재길)

가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% 경감하고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20%경감하고 중구상권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30% 경감.
- 본조문용어중 “지체부자유자”를 “장애인”로 개정하여 혜택의 범위를 확대
-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,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주차장에 주차대수의 2%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.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에 500원을 적용하고 10분단위로 초과요금을 적용하도록 함.

다. 관련법규

- 주차장법 제14조제2항,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제8조제2항
-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, 제17조
- 자동차관리법제3조, 동법시행규칙제2조제2항
- 장애인 복지법제2조, 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

4. 검토보고 요지

-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승용차 운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승용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감하고, 30분 단위로 초과요금을 징수하였으나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여 징수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, 주차의 편의제공을 “지체부자유자”에서 “장애인”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, 자동차 부제운행 및 자동차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과 중구 상권살리기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조 할 수 있을것이므로,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됨.

5. 심사내용

- 제6조제4항3호인 “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%를 경감한다”를 “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20%를 경감한다”로 수정하였고, 제6조제4항4호인 “중구상권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 주차 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%를 경감한다”를 삭제 심사하였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(중 구 청 장 제 안)	수 정 안 (건설환경위원회수정)
<p>제6조(주차요금등)①~③(생략)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1급내지 6급장애인 또는 국 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 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 지 6급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 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 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 과시와 1일 및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.</p> <p>제6조(주차요금등)①~③(현행과같음) ④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증 경 감대상자동차 및 그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아래 각호의 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높 은 할인율을 적용한다.</p> <p>1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 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케하는 경 우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주차요금 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.</p> <p>2.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제2항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</p> <p>3. <u>도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</u> <u>에 의한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</u> <u>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</u> <u>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</u> <u>를 경감한다.</u></p> <p>4. <u>중구 상권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</u> <u>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행하는</u> <u>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하여는</u> <u>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경감한다.</u>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	<p>좌 동</p> <p>(중구청장제안“안”과같음)</p> <p>3. 자동차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 는 차량에 대하여 도청장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하여 주차요 금의 20퍼센트를 경 감한다.</p> <p>4.(삭제)</p>	